

스타트업 계약서 Kit(V.2.0)

주식양수도계약서

안내사항

- 본 계약서 양식의 개별 조항 및 안내글은 사용자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삭제/변경될 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본 계약서(안)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기타 손해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와 모두싸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최종 계약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소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발행된 주식을 양도, 양수할 때 작성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경영 및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에게 보상하거나 주인의식 고취 및 동기 부여를 위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아닌 회사가 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목적의 계약서로서 진술 및 보장, 계약의 해제, 반환 조건, 경업금지, 근속 의무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목적과 무관한 제3자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계약서 활용 시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 수정하여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1. 계약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세요.

계약서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계약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나눠보세요.

2.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본 계약서 및 해설서는 기업의 규모, 업종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른 불특정 다수의 기업(또는 개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계약서를 표준화하였습니다. 본 계약서와 해설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3. 표준적인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준적 형태의 계약서는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조항은 사용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되어야 합니다. 본 계약서(안)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기타 손해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와 모두싸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세요.

최종계약서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해야 사용자에게 필요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매도인

매수인

대상회사

2000. 00. 00

주식양수도계약서

본 주식양수도계약(“본 계약”)은 2000년 [*]월 [**]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매도인 대주주 (00.00.0. 생)
 서울시

매수인 김 (00.0.0. 생)
 서울시

이하 매도인, 매수인을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 문

매도인은 본 계약에 정한 내용과 조건에 따라 주식회사 [] (“회사”)의 보통주식 00,000주(“대상 주식”)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단, 매수인이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상 주식을 본 계약에 정한 조건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제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해설] 실제로 양도하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 음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의 경영 및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에게 대한 보상, 주인의식 고취 및 동기 부여를 위해 대상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상호 합의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해설]

‘임직원 보상형’을 전제로 한 조항입니다. 이와 무관한 경우에는 본래 취지에 따라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2조 대상 주식 및 매매 조건

본 계약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회사의 보통주식 및 매매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주의 금액 : 0,000원
2. 주식의 수 : 00,000주
3. 매매대금의 총액 : 00,000,000원

[해설]

1. 주식의 ‘액면가’를 기재하면 되고, 양자가 합의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평가한 가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제로 양도하는 주식의 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3. 1주의 금액과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3조 주식 인수 및 권리 이전

- (1) 매수인은 본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총액을 지급한다.
- (2) 대상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총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3) 매도인은 회사로 하여금 주권미발행확인서 및 제2항의 권리 변동이 기재된 주주 명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매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2. 대상 주식은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발행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되거나 상환되어 소멸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우려도 없다. 매수인이 대상 주식에 대한

소유권 및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상실할 위험이 없다.

[해설]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으며, 고의적으로 정보를 숨기고 있지 않음을 보증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진술 및 보증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다 64253 판결은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위반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양수인 원고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조항과 관련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 등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조 매수인의 주식 처분

매수인은 대상 주식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유통의 허부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해설서의 가독성을 위한 여백입니다.>

제6조 경업금지

1. 매수인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향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신회사 설립, 경쟁사 주식취득 또는 기술자문, 개인사업의 창업 등 회사의 이해 관계에 배치되거나 회사와 경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임직원보상형의 경우 일정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주양수도
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의 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해지, 해제 또는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수인이 회사에서 퇴사한 후 1년까지 유효하다.

[해설]

통상적으로 1~2 년 정도를 기재하며,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일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 (1)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일에 본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된다.

[해설]

합의해지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어떤 사유로든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합의해지서를 기재하도록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합의해지'의 법리상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손해배상 특약이 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 다 8755 판
결), 합의해지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매도인은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설]

원칙적으로 시정에 관한 최고를 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한해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제
또는 해지 사유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의견 합치가 필요합니다.

1. 매수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해설] ‘중과실’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매수인이 대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3. 매수인이 직원으로서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는 경우.

[해설]

최근 판결에 따르면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을 경우 스톡옵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적법한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조항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규정의 경우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수인으로서 인사규정 위반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규정 중 특정 조항 위반(중대한 의무 위반)의 경우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4. 매수인이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직업 또는 영업을 겸업 또는 겸직을 한 경우

[해설] 임직원 보상형을 고려한 조항입니다.

5. 매수인이 제8조에서 정한 기간동안 근속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은, 매수인은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대상 주식을 반환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총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별도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원상회복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4) 해제 시점에 있어 회사 주식 가치의 변동이 있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상 주식의 가액과 총 인수대금의 가격 차익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가격 차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청구권은 포기하기로 한다.

[해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바, 매도인과 매수인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8조 근속 의무

매수인은 회사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후까지 회사에 근속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근속 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회사를 퇴직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액면가로 대상 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임직원 보상형을 고려한 조항으로써, 실무상 1~3 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하는 사유를 비자발적인 것으로 한정할 것인지 추가로 결정하여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에 따라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도 대상 주식 반환의 무가 있다고 규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손해배상책임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진술하거나 보장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본 계약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 또는 손실을 입거나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손해(손실 및 비용을 포함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1)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종료한다.

1. 당사자들 간에 본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2. 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전항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내용 변경

본 계약은 모든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개정,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으며, 관습,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다. 본 계약의 개정 또는 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해설]

실무상 계약의 내용 및 변경시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서면’에 의한 것도 인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라고 기재하기도 합니다.

제12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3조 기밀유지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존재, 본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및 본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일체를 기밀로서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완전 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 간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한 구두 또는 서면의 명시적인 또는 암시적인 약속, 조건 또는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본 계약이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이전의 모든 합의를 대체한다.

[해설]

이 조항에 따라 양자 간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 11 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야 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5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선의에 기초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러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하는 재판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이하, 서명 날인을 위한 여백입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0. 00. 00.

매도인 대주주 (00. 00. 0. 생)
 서울시

매수인 김 (00. 0. 0. 생)
 서울시